

연구윤리지침

제 정 2010. 4.30.
개 정 2011. 1.17.
개 정 2014. 3.17.
전문개정 2015.10.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통한 연구윤리 확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연구원이 생산하는 모든 연구성과물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연구자”라 함은 연구책임자와 연구참여자를 말한다.
2.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중복게재·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원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원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판정”이라 함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4조(사전예방 의무) 원장은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자체과제 및 수탁과제의 연구진행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자의 책무) 연구자는 이 지침이 정하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하는 등 연

V-1-5. 연구윤리지침

구윤리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원의 책무) ① 연구원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윤리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연구자들이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연구윤리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③ 연구원은 보고서의 연구윤리 위반 정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정하고 그 결과와 제재방안을 원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7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중복게재”라 함은 연구자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자기표절”과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하는 “이중게재”를 포함한다.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조(위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한다.

1.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가상의 주제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여 연구 결과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2. 설문 조사, 실험 및 관찰 등에서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를 실제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3.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자료의 통계학적인 유효성을 추가하기 위해 허구의 자료를 첨가

하는 경우

4. 연구계획서에 합치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하는 경우

제9조(변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한다.

1.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2. 연구 자료의 통계 분석 결과 분명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릇되게 설명하는 경우
3. 통계학적 근거 없이 연구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생략, 삭제, 은폐하는 경우
4. 연구 자료를 과장, 축소 또는 변형함으로써 왜곡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

제10조(표절)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표절에 해당한다.

1.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2.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면서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3. 재인용 표기를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원문을 본 것처럼 1차 문헌에 대한 출처표기를 한 경우
4. 출처표기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된 양 또는 질이 적절한 범위를 넘어 피인용물과 인용물이 주종(主從)의 관계에 있는 경우
5. 타인(1인 또는 다수)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그에 대해 모두 출처표기를 해야 하지만 어느 일부에만 하는 경우
6. 타인의 저작물 상당 부분을 참조했다고 표기했지만, 실은 말바꿔쓰기나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윤리 평가규정」 제9조제2항을 준용하여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2.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을 말바꿔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3. 협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부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총괄보고서-세부보고서 형태의 연구과제 중 총괄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그 세부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4. 연차보고서 또는 동일한 주제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

V-1-5. 연구윤리지침

를 한 경우

5. 판례·법령을 인용할 때, 판례번호·법조항을 표기한 경우

제11조(부당한 저자 표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당한 저자 표기에 해당한다. 단, 게재지의 편집 방침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공동 저자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문, 주(註) 등을 통해 그 사유와 실명을 밝혀야 한다.

1.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2. 저자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제12조(중복게재) ① 자신의 기존 연구물을 자신의 새로운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1.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2. 활용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 중 일부에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출처표기를 한 경우
3. 출처표기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연구보고서에 인용된 내용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윤리 평가규정」 제11조제2항을 준용하여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출판되지 않은 자신의 학위논문의 내용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하는 경우
2. 용역보고서의 요약, 정책 제안서 등과 같이 특정 기관의 요청 또는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이전 보고서를 활용하는 경우
3. 연구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연구의 초고, 이슈페이퍼, 연설문, 비학술성 잡지, 워킹페이퍼, 브리프 등에 실린 원고, 기타 이에 준하는 연구 자료를 자신의 연구보고서에서 활용하는 경우
4.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를 하지 않거나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5.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말바뀌쓰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6. 협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부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세부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7. 연차보고서 또는 동일한 주제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에서 참고한 문헌에 대해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를 한 경우

8.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 중에서 학술성을 추구하지 않는 정책적 제언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연구보고서에서 다시 활용하는 경우

③ 이미 출간된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출간하는 경우에는 번역의 목적과 필요성, 해당 학문분야의 특성, 사용된 언어와 소속 연구기관의 출판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13조(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담당부서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실시하는 연구윤리평가 결과 연구윤리 위반 의심사례로 최종 판정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연구부정행위 심사대상) 연구부정행위의 심사대상은 연구원이 생산하는 모든 연구 성과물로 한다.

제15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원장은 제보자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제보자는 담당부서에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업무 담당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6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원장은 피조사자에 대해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7조(연구윤리위원회 운영) 원장은 연구자의 연구윤리 위반 정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정하고 그 결과와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제18조(진실성 검증 원칙) ①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여부의 입증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V-1-5. 연구윤리지침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원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구성하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위원을 2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④ 조사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조사·판정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조사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조정팀장으로 보한다.

제20조(연구윤리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이나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며,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후임 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 기록의 상실, 파손, 은닉,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원장에게 징계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2조(수당지급) 연구윤리위원회 회의, 심의 등에 참여한 위원 및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해 참석한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신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의 연구부정행위 의심 유형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사례 및 관련 연구과제
3. 기타 관련 증거자료 등

③ 예비조사는 연구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본조사) ① 연구부정행위 의심사실에 대한 조사는 원장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판정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내에 판정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 15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판정) ① 본조사 내용 및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의심사례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의심사례의 사실 여부 판정 결과
4. 관련 근거 또는 증인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진술 및 변론 내용
6. 심의결과 및 건의사항
7. 위원 명단 등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판정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26조(이의신청)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명시하여 연구기획조정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7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및 제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위반 정도의 심각성,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 중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제재의 수위를 결정하여 원장에게 건의한다.

1. 구두 또는 서면상의 주의 및 경고
2. 해당 발간물에 대한 수정
3. 해당 발간물의 발간 금지 또는 발간물의 폐기
4. 향후 일정기간 동안 출연금사업 참여 배제
5. 연구원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6. 해당 보고서 업적평가 점수 감점

V-1-5. 연구윤리지침

7. 연구윤리 교육 이수 의무화

②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윤리 평가규정」 제16조제4항에 의거,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의 기록 및 공개) ① 연구윤리 심의 관련 기록은 연구기획조정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연구윤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 4.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 1.17.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 3. 17. 부터 시행하되, 2014. 2. 10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 10. 29.부터 시행하되, 2015. 10. 1.부터 적용한다.